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후속조치 계획(안)

## □ 개요

- (관련근거)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27조, 제28조
- (평가기간) '22년 7월~9월
- (평가방법)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KMAC) 의뢰를 통한 연구원 인권실태 파악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	체크리스트별 근거자료 수집	인권경영 주관부서 검토	인권영향평가 실시 (KMAC)	인권경영 위원회 심의·의결

- (평가지표) 기관운영 분야 140개 지표, 주요사업\* 분야 9개 지표
  - \* '21년 기관운영지표 133개, 주요사업은 기술이전 분야 지표 10개
  - \* '22년 주요사업은 중소기업협력그룹 분야 지표로 선정하고 지표 9개.
- (평가결과) 3건의 개선과제 도출(기관운영 1건, 주요사업 2건)

구분	분야	지표	개선 의견
기관 운영	산업안전 보장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임신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조치' 관련 조항은 명시되지 않고 있음. 임신부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규정 보완]		
주요 사업	신규지원 과제 선정	연구원은 신규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종료시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는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고 있지 않음.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신규과제 선정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개선 필요
	진도관리	연구원은 과제 진도관리시, 과업수행 현황점검, 필요사항 요청 및 협의 사항을 문서로 남기고 있다.	기술선도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진도관리 관련, 과제수행현황점검, 필요사항 요청 및 협의사항을 문서로 남기고 있으나, 지침상 진행상황 보고 시기가 '적당한 시기'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음. 따라서,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진도 보고 시기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후속조치 계획

구분	개선 의견	개선 계획/결과
[기관운영] 산업안전 보장	임신근로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조치' 관련 조항 명시	['23년 1/4분기내 조치 예정] 취업규칙관련 임신근로자 근무지 변경조치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주요사업] 중소기업 협력그룹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개선 필요	['23년 1/4분기내 조치 예정] 「기술선도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이의신청제도 마련 예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관리지침상 진도관리 등 필요사항 발생시 '적당한 시기'의 모호한 표현 개선	['23년 1/4분기내 조치 예정] 「기술선도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용어 개선 예정

\* 개선과제 이행결과 등은 차기 인권경영위원회 등을 통해 보고 예정

\*\* 개선과제 이행 완료 시기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참고: 2021년 인권영향평가 개선 결과

구분	개선 의견	개선 계획/결과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통합적인 구제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매뉴얼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년 하반기 조치 예정]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추진체계 정비 및 운영매뉴얼 마련 예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침해사건에 대한 통합적인 구분 가이드를 제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22년 하반기 조치 예정]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마련하여 내·외부 공지 예정*
[주요사업] 기술이전	기술정보 검색시 키워드 검색을 추가하여 현행 산업/과학기술분류체계가 혼용되어 발생하는 검색결과를 보완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함	['21년 8월 조치 완료] 표준성과관리망 기술이전목록에서 조회 시, 키워드 검색 기능 추가
	제3자가 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내부 규정(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2년 상반기 조치 완료] 해당 내용 반영한 내부 규정(기술이전 요령) 개정 예정